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34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김원이・김주영・박지혜

정진욱 • 어기구 • 김교흥

진성준 • 박해철 • 김동아

허종식 · 장철민 · 송재봉

오세희 • 박홍배 • 추미애

남인순 · 김성환 의원

(179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4433호)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